



수입신고필증

※ 처리기간 : 3일

① 신고번호	② 신고일 2022/09/29	③ 세관과 012-D9	④ 입항일 2022/09/26	⑤ 전자인보이스 제출번호
④ B/L(AWB)번호	⑤ 화물관리번호	⑥ 반입일 2022/09/28	⑦ 징수형태 11	
⑧ 신고인 ⑧ 수입자 ⑧ 납세의무자 (주소) (상호) (성명) ⑧ 운송주선인	⑨ 통관계획 D 보서구역장치후	⑩ 원산지증명서 유무 Y	⑪ 총중량 24,009.99 KG	
⑨ 무역거래처 TEYS AUSTRALIA PTY LTD (AU) / AUTEYSAU0010Y	⑩ 신고구분 A 일반P/L신고	⑪ 가격신고서 유무 Y	⑫ 총포장갯수 1267 GT	
⑫ 검사(반입)장소 01206041-2200001587((주)삼진글로벌넷 제2냉장 보세창고)	⑬ 거래구분 11 일반형태수입	⑭ 국내도착항 KRBNP 부산신항	⑮ 운송형태 10-FC	
⑬ 품명·규격 (란번호/총란수 : 001/001)	⑯ 종류 21 일반수입(내수용)	⑰ 적출국 AU AUSTRAL	⑱ 선기명 SEASPAN HANNOVER HK	
⑭ 품명 BONELESS MEAT OF BOVINE ANIMALS	⑲ MASTER B/L번호	⑳ 운수기관부호		
⑮ 거래품명 *A* BOLAR BLADE IV(FROZ)	⑳ 상표 TEYS			
⑯ 모델·규격	㉑ 성분	㉒ 수량	㉓ 단가(USD)	㉔ 금액(USD)
(NO. 01) *A* BOLAR BLADE IV (FROZ) PS: FROZEN USE: EDIBLE	BEEF 100% EST 7 BRISBANE	22,922.96 KG		
㉕ 세번부호 0202.30-0000	㉖ 순중량 22,922.96 KG	㉗ C/S검사 S 성략	㉘ 사후확인기관	
㉙ 과세가격(CF) S W	㉚ 수량 0	㉛ 검사변경	㉜ 특수세역 0.00	
㉝ 수입요건확인 (발급서류명)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축산물(사료등)검역증명서		
㉞ 세종 관	㉟ 세율(구분) (FAU)호가	㊱ 감면율 0.00	㊲ 세역	㊳ 감면분납부호 K020107
부	10.00 (B)	100.00	0	0
㊴ 결제금액(인도조건-통화종류-금액-결제방법)		CIF-USD-158,168-TT		㊵ 환율
㊶ 총과세가격 S W	㊷ 운임 0	㊸ 가산금액 0	㊹ 납부번호	㊺ 부가가치세과표 0
㊸ 세종	㊹ 세역	㊻ 신고인기재란		
관세		㊼ 세관기재란 - 수입통관 후 단... (내용 생략) - 사후심사... (내용 생략)		
개별소비세	0			
과세취급료	0			
주세	0			
교육세	0			
농어촌특별세	0			
부가가치세	0			
신고지연가산세	0			
미신고가산세	0			
㊽ 총세액합계	㊾ 담당자 김재영	㊿ 접수일시 2022/09/29 11:37	㊿ 주리일자 2022/09/29	



발행번호 : [redacted] 세관과 : 012-D9 신고번호 : [redacted] Page : 1/1

- * 본 신고필증은 발행 후 세관심사 등에 따라 정정·수정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발행번호 등을 이용하여 관세청 인터넷포털 (<http://unipass.customs.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수입신고필증은 세관에서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한 것이므로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신고인 또는 수입화주가 책임을 지야 합니다.
- * 본 신고필증은 전자문서(PDF파일)로 발급된 신고필증입니다.
- * 출력된 신고필증의 진본여부 확인은 전자문서의 '시정확인필' 스티มป์로 출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214- [REDACTED]

법인명(단체명) : 주식회사 [REDACTED]

대표자 : [REDACTED]

개업연월일 : 2010년 [REDACTED]월 [REDACTED]일 법인등록번호 : 110111-[REDACTED]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REDACTED]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REDACTED]

사업의종류 : 업태 도소매 종목 축산물

발급사유 : 주소변경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REDACTED]

2020년 09월 09일

성동세무서장



2022년 10월 7일
(주)디에셋펀테크

대출거래약정서

담당	팀장	대표이사

565-81-0041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126길 63, 301호
주식회사 디에셋펀테크
대표이사 조 병 화



채권자	2014년 1월 1일 주최회사 서울시 강남구 동:소매 축산로		연락처 :
차입자 (간 담보제공자)	성명		(인) 연락처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담보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	성명		(인) 연락처 :
	생년월일		
	주소		

본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주)디에셋펀테크(이하 "회사 또는 채권자"라 한다)와 아래의 조건에 따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온라인투자연계 대출 계약 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인한다

제1조 거래조건

①대출과목, 대출(한도)금액,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율, 거래방식 등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다. (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저의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V"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금액	금 85,000,000	거래구분	<input type="checkbox"/> 한도거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별거래
		대출계좌번호	
	*신규계약: 채무자가 최초 약정한 금액 *연장계약: 전종 채무잔액 *추가대출계약: 기 대출금액+채무자가 추가로 약정한 금액		
여신일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투자금액 모집완료일	대출기간만료일	<input type="checkbox"/> 년 월 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별거래에서 정한 일
자금용도	영양자금	이자 및 원금 상환 재원	홍상호 본인에 대금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자율:연13% <input type="checkbox"/> 연체료: 미납이자에 대하여 연 % (약정이자 + 3%) <input type="checkbox"/> 지연배상금율: 연 % (약정이자+3%)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별거래에서 정한 이율로 한다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 방법	1.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2. 이자계산방법 예시 ①(대출잔액×연이자율÷365(윤년의 경우 366))×이용일수 ②(대출잔액×연이자율÷12)×이용개월수
수수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취급수수료: 대출 취급액의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체관리수수료: 대출 잔액의 3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중도상환수수료: 상환금액의 / %	연체관리 수수료 계산방법	온라인투자연계 대출계약약관 제11조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월 %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대출실행방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증명서류나 담보물권 등에 의하여 대부업자가 자금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실행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출신청금액대비 투자자금 모집이 부족한 경우 대출신청금액을 감액하여 실행한다 <input type="checkbox"/> 채무자의 인간한도 내에서 전별로 대출 실행한다.		
상환방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단기일시상환 ● 대출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은 은행송금(채권자 입금계좌)등 당사자가 약정한 방법에 의한다. ● 대출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은 비용, 수수료, 연체료, 연체이자, 이자, 원금순으로 충당한다.		
대출금수령계좌	채무자 본인 명의 계좌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명	
부대비용	담보물권 설정비용 담보물관리비용(예: 창고 보관료 등) 연체에 따른 일체의 법적 절차 및 추심비용	기타 특약	대출금 기일 연장의 경우 대출만기일기준()영업일 이전에 대출연장을 신청하기로 하며, 회사의 투자금액 미달시 연장에 필요한 부족금액은 대출만기일에 상환하기로 한다

② 회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차입자가 대출금 수령후 즉시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제2조 이자 및 지연배상금

①수수료, 연체료, 연체이자, 등 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연체료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이자 납입기일에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용당일로부터 1개월까지 비지급기간동안 비납부이자에 대하여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③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개인의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2개월), 등으로 온라인부자 연계 대출계약약관 제12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차용금잔액 전부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 및 약정위반수수료를 지급하기로한다.

제3조 대출금 원리금의 상환

①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회사가 지정된 차입자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② 차입자는 본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만기일 이전이라도 상환할 수 있으며, 대출금 상환에 따른 이자는 상환원금에 대하여 상환일까지 이자를 상환수수료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정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환금액의 (%)으로 한다

제3조 대출취급 및 대출금 연체에 따른 비용의 부담

①본 대출약정에 따른 신용조사비용 및 담보물선정비와 인지대는 대출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다

②대출금 연체에 따른 법적 조치비용을 회사가 우선 지급한 경우 차입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인 20%를 더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제4조 차용금 내역

한도거래 및 견별거래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액과 내역은 별지 양식이 정한 바에 따라 대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차입자는 이를 수령한 즉시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감액·정지

대출 연장시점에 금융사정의 변동, 채권 보전상 필요있는 때에는, 회사는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대출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대출 초과금액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이내에 갚기로 한다.

제6조 담보권 설정 및 해지

①이 약정서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별도의 절차 및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다

②회사는 온라인 부자연계 대출계약 약관 제11 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한 경우 제8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기로 한다

③대출 원리금 등 차입자가 지급할 일체의 금액이 상환된 때에는 회사는 대출자가 담보물건의 해지를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해지비용 부담은 대출자로 한다

제7조 대출자금 용도 확인

①회사는 차입자에게 지급한 대출금에 대하여 자금사용 내역 및 증빙을 요구할 수 있고 대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전항에 정한 바에 따라 대출금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대출금 신청시 제출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기로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2조 3항에 따라 지연배상금 및 약정위반 수수료를 그 상환일까지 부과하기로 한다

제 8 조(통지)

①회사는 차입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E-Mail, 기타 전자기기를 통한 통신 프로그램을 통해 통지함으로써 그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①온라인부자연계 대출계약약관 제11조의 사유로 인한 통지는 동 약관 제12조를 준용하기로 하되, 수취인 불명 및 송달 불능의 경우 전항으로 그 통지의무 및 절차를 갖춘할 수 있다

제9조 (상환자력 유지 의무 등)

①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기로 한다

②본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기로 한다

1. 사업장 폐업,이전,확장
2. 타인의 채무보증

3. 개인정보처리 신청

4. 기타 채부에 대한 상환요구 및 법적 조치 통지를 수령한 때

제10조 (자료의 제출 등)

본인은 회사가 온라인투자연계 대출 계약약관 제 25조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 및 기타 이 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응하기로 한다

제11조 (대출금의 수령)

① 대출금은 제1조에 정한 대출금 수령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차입자는 본인의 계산과 요청으로 대출금에서 제1조에 정한 수수료 및 부대비용 등의 지급내역 및 지급방법을 회사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기로 한다

제12조 특약사항

회사는 차입자에 대한 채권 일체에 대하여 투자자 또는 법령에 정한 제3자에게 대출 원리금 청구권 및 이에 부수하는 담보일체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 통지는 양도일 이후 제 조에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 차입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1. 수령함, 2. 들었음, 3. 들었음)

1. 위 계약서 및 온라인투자금융 대출거래표준약관을 확실히 수령하십니까?	수령하였음
2. 위 계약서 및 온라인투자금융 대출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설명되었음
3. 중개수수료를 차입자로부터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까?	설명되었음

양동5당복계양서 041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126길 63, 301호
주식회사 디에셋핀테크
대표이사 조 병 화



채 권 자 (양도담보권자,갑)	성 명		
	주 소	214-	
채 무 자	성 명	주식회사	
	주 소	서울시광진구	
양도 담보권 설정자(을)	성 명	214-	
	주 소	주식회사 서울시광진구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양도 담보계약을 체결한다.

도,소매 축 산 금

제 1 조 【양도담보의 약정】

양도제공자는 귀사의 대부거래업무기본약관 및 다음 제2호에 정하는 피담보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위해 그의 소유인 말미역기채물건(이하 양도물건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귀사에게 양도하고 귀사 앞으로 그 인도를 하였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는 피담보 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양도담보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고 함)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채무를 포함 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 1) 채무자가 귀사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특정근담보)
 (1) 대출거래약정서에서 정한 각 차용금 내역
 - 2) 채무자가 귀사(본지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한정근담보)
 (1) 거래
 (2) 거래
 - 3) 귀사(본지점)이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여신 또는 수프상의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포괄근담보)
2. 담보한도(이자지연배상금부채무 일체를 포함한다) : 채권최고액 금 **양동5당복계양서** 원
 최소 채권액을 기준 상여 한도액을 정하였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이 계약을 특정채무담보 양도담보계약으로 해석하지 않기로 합니다.
3. 양도담보권 결산기
 채권자는 양도담보권 결산기를 지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2)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합니다.
 - 1) 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설정자는 서면에 의하여 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에 의한 해지의 효력발생은 의사표시의 귀사 할 도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 하여 이를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장래지정형)
 - 2) 대출거래약정서의 각 차용금내역에서 정한 시기
 - 3) 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양도담보권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고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 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 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설정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부 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자동확정형)

제 2 조 【피담보채무범위 등의 변경】

귀사는 채권보전을 위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한 피담보채무 범위의 변경-담보한도의 증액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의 경구를 설정자에게 할 수 있으며, 설정자는 지체없이 이에 동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한다. 그러나 설정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제 3 조 【양도물건의 정유-관리】

1. 양도물건(제7조의 갈아넣거나 새로 들여온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양도제공자가 귀사의 대리인으로서 이후 정유 관리하여 그 비용을 부담한다.
2. 양도물건의 정유 관리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보관장소-보관설비-기타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는 모두 귀사의 지시에 따르며 그 변경은 귀사의 사전 승낙 없이는 아니한다.

제 4 조 【보험계약】

1. 양도제공자는 양도물건에 대하여 귀사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설정자가 임의 선택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이 계약이 존속하는 한 이를 계속하기로 한다.
2. 설정자는 제1항의 보험계약에 있어서 귀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그 보험증권을 귀사에 교부한다.
3. 양도제공자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 외에 양도물건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곧 귀사에 통지하겠으며 이 보험계약에 관하여도 제1항, 제2항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4.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계약의 계속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의 인기일 3일전까지 절차를 마치고 그 보험증권을 귀사에 교부하겠으며, 그밖에 보험계약의 경과-변경 및 보험사고 발생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귀사의 의사에 따른다.
5. 양도제공자가 제1항, 제3항, 제4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귀사가 채권보전상 필요한 보험계약을 설정자를 대신하여 맺거나 계속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와 양도제공자는 연대하여 귀사가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제 비용에 대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귀사가 정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곧 지급하기로 한다.

6.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 잡아 귀사가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귀사는 그 수령금으로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은행에 신거래기본약관 제12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제 5 조 【양도물건의 보존 등】

1. 담보제공자는 양도물건의 열실·훼손·기타의 사고 또는 가격의 하락이 있거나 또는 그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곧 이를 귀사에 통지하며 이 경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귀사에게 아무런 청구도 아니하기로 한다.
2. 양도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항이 있거나 기타 다름이 생길 때에는 담보 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하며 귀사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되거나 그 이익을 해할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담보가치의 유지】

제5조 제1항의 경우에는 귀사의 청구에 따라 담보제공자가 상당액의 물건을 곧 보충하여 귀사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 7 조 【양도물건의 변경】

1. 담보제공자는 양도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팔아 놓거나 또는 새로 물건을 들여올 때에는 귀사의 승인을 받았으며 그 팔아놓은 물건이나 새로 들여온 물건에 대하여도 따로 계약할 것 없이 이 계약에 의하여 모두 귀사에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한다.
2. 양도물건에 의하여 제공·가공되는 재공품·반제품·연제품·부선물이나 양도물건에 부합된 물건도 당연히 이 계약에 의하여 양도되고 인도를 마친 것으로 한다.

제 8 조 【양도물건의 처분】

채무의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에 귀사는 사전의 통지 없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가·가격 등에 의하여 양도물건을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채비용을 뺀 잔액을 은행에신거래기본약관 제12조에 준하여 나머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또는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의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가·가격 등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하여 양도물건을 취득할 수 있기로 한다.

제 9 조 【양도물건의 인도·대리처분】

1. 귀사로부터 양도물건의 인도청구를 받을 때에는 담보제공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고 언제든지 귀사 또는 귀사의 지시인에게 인도한다.
2. 귀사가 양도물건을 처분할 경우 귀사의 청구가 있으면 그에 따라 담보제공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매매계약 기타 필요한 행위를 대리하여 처리하며 매각처분의 대정은 곧 귀사에 인도한다.

제10조 【물상대위】

양도물건에 관하여 열실·훼손·공용징수 기타의 원인으로 제3자에 대한 보험금·해상금·보상금 등의 청구권이 생긴 때에는 귀사는 이를 수령하여 그 수령금으로 제4조 제6항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제11조 【양도물건의 회보·조사】

1. 담보제공자는 양도물건에 관하여 매월1회 이상 귀사가 지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양도물건영세표를 작성하여 귀사에 제출하였으며 귀사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청구할 때에는 곧 그 당시의양도물건영세표를 작성 제출하기로 한다.
2. 귀사가 필요에 따라 양도물건의 조사에 임할 경우 담보제공자는 언제든지 적절한 협조를 한다.

제12조 【비용부담】

위 각 조항 중에 정한 외에도 귀사의 이 계약에 의한 권리의 보전이나 행사 등에 관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가 연대하여 부담하며 귀사가 대신 지급한 때에는 곧 이를 갚는다.

제13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1.
- 2.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22년 10월 9일

(갑) 주 소 : 565-81-0041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26길 63, 301호
 주식회사 디에셋핀테크
 성 명 : 대표이사 조 병 화
 연 락 처 :



(을) 주 소 : 214-
 주식회사
 성 명 : 서울시평진구
 연 락 처 : 드,소매 축 산 북



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214- []		법인명	주식회사 []	2021년12월31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110111-*****					
계정과목		코드	금액	계정과목		코드	금액
I. 유동자산		001	5,506,092,245	나. 계세예수금		248	2,767,810
(1) 당좌자산		002	4,875,928,995	6. 미지급비용		251	3,164,850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003	63,254,023	11. 기타유동부채		279	582,861,669
2. 단기예금		004	33,000,000	II. 비유동부채		284	0
4. 대출채권(공사·분양수입 외)		009	2,433,941,671	부채총계(I+II)		333	4,413,764,609
가. 외상매출금		010	2,433,941,671	III. 자본금		334	100,000,000
6. 미수금		031	29,000,000	1. 보통주자본금		335	100,000,000
다. 기타미수금		036	29,000,000	IV. 자본잉여금		337	0
7. 선급금		038	2,316,738,301	V. 자본조정		348	0
(2) 재고자산		044	630,163,250	V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61	0
1. 상품		045	630,163,250	VII. 이익잉여금		372	1,087,374,256
(3) 기타유동자산		067	0	5. 미지분이익잉여금(미처리권손금)		381	1,087,374,256
II. 비유동자산		080	95,046,620	자본총계(III+~VII)		382	1,187,374,256
(1) 투자자산		081	27,730,195	부채와 자본총계		383	5,601,138,865
1. 장기예금		082	27,730,195				
(2) 유형자산		110	46,815,025				
7. 차량운반구		134	41,681,540				
10. 공구·기구·비품		145	3,057,980				
(감가상각누계액)		146	1,324,495				
11. 기타유형자산		149	3,200,000				
(3) 무형자산		169	0				
(4) 기타비유동자산		194	20,701,400				
4. 보증금		217	20,701,400				
가. 입자보증금		218	2,500,000				
나. 기타보증금		330	18,201,400				
자산총계(I+II)		228	5,601,138,865				
I. 유동부채		229	4,413,764,609				
1. 매입채무		230	1,973,621,504				
가. 외상매입금		231	1,973,621,504				
2. 단기차입금		234	1,757,756,594				
다. 기타단기차입금		237	1,757,756,594				
3. 미지급금		238	93,592,182				
가. 미지급법인세		239	15,038,630				
다. 기타미지급금		241	78,553,552				
5. 예수금		246	2,767,810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본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vw.hometax.go.kr)의 「민원증명」 서비스에서 「민원증명 원본확인」 메뉴를 통해 문서발급번호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거나,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 확인해 주십시오. 다만, 문서발급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 (공문서를 위·변조하거나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본 증명은 홈택스(vw.hometax.go.kr)에서 대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증명서입니다.

* 본 증명은 대리인(이원세무회계사무소)이 신청하여 발급한 것입니다.

2021년 01월 01일 부터		표준손익계산서 (일반법인용)		법인명	주식회사
2021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자등록번호	214-
(단위 : 원)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I. 매출액	001	12,554,409,331	VII. 영업외비용	179	128,469,560
1. 상품매출	002	12,554,409,331	1. 이자비용	180	127,309,916
가. 국내상품매출	003	12,554,409,331	21. 기타	212	1,159,644
II. 매출원가	035	11,539,085,319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217	194,314,552
(1) 상품매출원가	036	11,539,085,319	IX. 법인세비용	218	21,136,310
1. 기초재고액	037	1,012,906,747	X. 당기순손익	219	173,178,242
2. 당기매입원가	038	11,156,341,822			
4. 기말재고액	040	630,163,250			
III. 매출총손익	066	1,015,324,012			
IV. 판매비와관리비	067	695,038,966			
1. 급여	068	273,527,574			
나. 직원급여	070	264,227,574			
라. 직원상여금	072	9,300,000			
3. 보험료	078	35,975,034			
4. 복리후생비	079	32,064,750			
5. 여비교통비	080	759,090			
6. 임차료	081	28,000,000			
가. 부동산임차료	082	28,000,000			
7. 접대비	085	592,780			
10. 세금과공과	090	8,888,170			
11.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 포함)	091	1,415,662			
13. 차량유지비(유류비 포함)	093	27,863,024			
20. 지급수수료	104	136,300,551			
가. 국내지급수수료	105	136,300,551			
22. 소모품비	108	23,073,320			
23. 통신비	109	4,816,691			
24. 운반비	110	13,897,000			
25. 보관료	111	104,910,120			
28. 수도광열비(전기료 제외)	114	1,293,850			
29. 전기료	115	1,592,270			
30. 인쇄비	116	69,080			
V. 영업손익	129	320,285,046			
VI. 영업외수익	130	2,499,066			
1. 이자수익	131	285,549			
28. 기타	174	2,213,517			



- * 본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민원증명」 서비스에서 「민원증명 원본확인」 메뉴를 통해 문서발급번호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거나,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 확인해 주십시오. 다만, 문서발급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 (공문서를 위·변조하거나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본 증명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대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증명서입니다.
- * 본 증명은 대리인(이원세무회계사무소)이 신청하여 발급한 것입니다.

KEEP FROZEN
IWWAC
KEEP FROZEN
281295

입고 화물 증

화주명	디에셋핀테크	입고일자	2022-09-27
품목명 (브랜드)	볼라전각(TEYS)		
원산지	호주	B/L	
총중량	10,220.85 kg	수량	565 BOX
평균	18.09 kg	유통기한	2024.06.30

본 화물의 소유권은 디에셋핀테크에 있으며, 디에셋핀테크의 승인없이 화물의 출고 및 담보확인증 등 화물과 관련된 어떤 서류도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The Asset Fund

(주)

반출표시사항
1. 제품명: 냉동새고기
2. 수입처: 수입새고기(발다라)
3. 포장사: 발다라 200g 200개/박스





이체 요청서

귀하

2022년 10월 4일

품 목	수 량	B/L NO	비고
블라전각	565		

상기와 같이 ㈜디에셋핀테크 에게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인감
상 호 : ㈜ 주 소 : 서울 광진구 대표자 :	

(주)